



창녕군 고시 제2024-70호

## 창녕군계획시설(홍포어린이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창녕군계획시설(홍포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포장개체 및 휴게쉼터의 변경설치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창녕군청 산림녹지과(☎055-530-166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4. 04. 15.

## 창녕군수

1. 창녕군계획시설(홍포어린이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
2. 변경사유 : 창녕군도시계획시설(홍포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포장개체 및 휴게쉼터의 변경설치로 인한 도면 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형도면을 변경하였음
3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계재생략)

【붙임조서】

## 창녕군계획시설(홍포어린이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 ①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홍포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1003-5	2,100.0	-	2,100.0	'76.12.7. (건고제194호)	

※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###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#### 1. 조성계획 총괄표

구 분		부지면적 (m <sup>2</sup> )	건축물			공작 물 (기)	비고
			동수 (동)	바닥 면적	연면 적		
총 계	기정	2,100.0	2	43.5	43.5	-	100.0%
공원시설	기정	1,257.1	2	43.5	43.5	-	59.8%
	변경	1,255.0	2	43.5	43.5	-	59.8%
도로 및 광장	소 계	기정	-	-	-	-	26.7%
		변경	-	-	-	-	26.4%
	도 로	기정	121.0	-	-	-	5.8%
		변경	183.9	-	-	-	8.8%
	광 장	기정	439.2	-	-	-	20.9%
		변경	370.8	-	-	-	17.7%
휴양시설	기정	73.9	-	-	-	3.5%	
	변경	77.3	-	-	-	3.7%	
유희시설	기정	514.9	-	-	-	24.5%	
운동시설	기정	58.9	-	-	-	2.8%	
편익시설	기정	49.2	2	43.5	43.5	-	2.3%
녹 지	기정	842.9	-	-	-	-	40.2%
	변경	845.0	-	-	-	-	40.2%

## 2. 시설결정규모

구 분	공원면적 (㎡)	시 설 른		건 폐 율		비 고
		시설면적(㎡)	비율	건축면적(㎡)	비율	
당 초	2,100	1,257.1	59.86	43.5	2.07	
변 경	2,100	1,255.0	59.76	43.5	2.07	

※ 시설율 : 60%이하 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1조)

※ 건폐율 : 20%이하 (창녕군계획 조례 제43조제5항)

## 3. 세부시설조서

구 분	도면 번호	시설명	부지면적 (㎡)	건축면적(㎡)			비고	
				동수	바닥 면적	연면적		
기정	총 계		2,100.0	2	43.5	43.5		
기정	공원시설 소계		1,257.1	2	43.5	43.5		
변경	공원시설 소계		1,255.0	2	43.5	43.5		
기정	도로 및 광장	소 계	506.2	-	-	-		
변경		소 계	554.7	-	-	-		
기정		산책로	121.0	-	-	-		
변경		산책로	183.9	-	-	-		
기정		1	광장	400.0	-	-	-	
변경		1	광장	331.6	-	-	-	
기정	2	진입광장	39.2	-	-	-		
기정	휴양 시설	소 계	73.9	-	-	-		
변경		소 계	77.3	-	-	-		
기정		3	휴게쉼터1	50.3	-	-	-	
기정		4	휴게쉼터2	23.6	-	-	-	
변경		4	휴게쉼터2	27.0	-	-	-	
기정	유희 시설	소 계	514.9	-	-	-		
기정		5	어린이놀이터	178.9	-	-	-	
기정		6	물놀이장	336.0	-	-	-	
기정	운동 시설	소 계	58.9	-	-	-		
기정		7	주민운동공간	58.9	-	-	-	
기정	편익 시설	소 계	49.2	2	43.5	43.5		
기정		8	음수전	5.0	-	-	-	
기정		9	샤워장	35.7	1	30.0	30.0	
기정		10	화장실	13.5	1	13.5	13.5	
기정	녹지		842.9	-	-	-		
변경	녹지		845.0	-	-	-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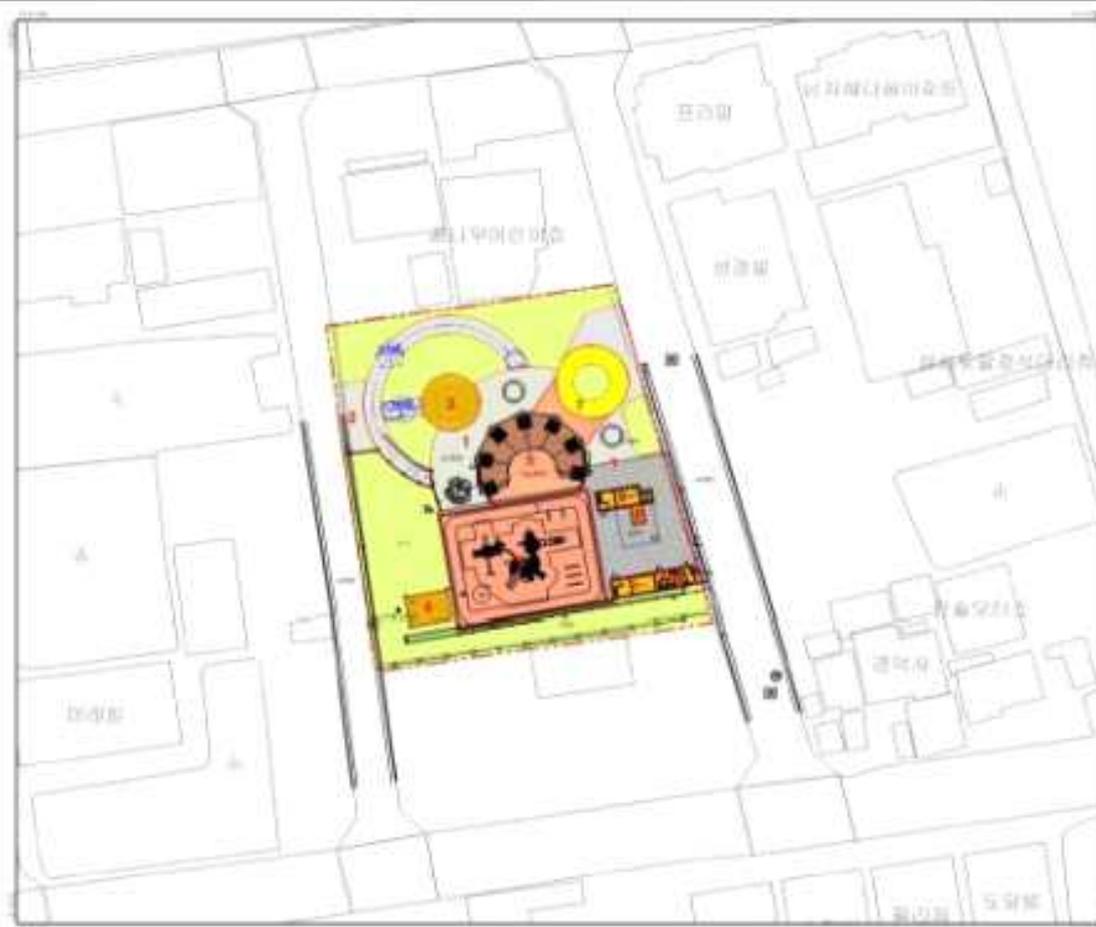
#### 4. 도로조서

구분	규 모				연 장 (m <sup>2</sup> )	면 적 (m <sup>2</sup> )	기 능	기 점	종 점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
기정	소 계				48.4	121.0				
변경	소 계				69.0	183.9				
기정	산책로	-	1	2.5	42.8	107.0	연결로	광장	광장	
기정	산책로	-	2	2.5	5.6	14.0	연결로	산책로1	휴게쉼터1	
신설	산책로	-	3	3.0	20.6	62.9	연결로	산책로1	휴게쉼터2	

□ 공원조성계획 결정(기정)도

홍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도

01



지명	구역	구분	면적(㎡)	면적(㎡)			비고	지명	구역	구분	면적(㎡)	면적(㎡)			비고
				합계	지정면적	잔여면적						합계	지정면적	잔여면적	
홍포어린이공원	1	공원	1,200.0	0	100.0	1,100.0	기타	2	공원	200.0	0	200.0	0.0	기타	
홍포초등학교	3	학교	1,200.0	0	100.0	1,100.0	기타	4	학교	200.0	0	200.0	0.0	기타	
홍포중학교	5	학교	1,200.0	0	100.0	1,100.0	기타	6	학교	200.0	0	200.0	0.0	기타	
홍포1동	7	공원	1,200.0	0	100.0	1,100.0	기타	8	공원	200.0	0	200.0	0.0	기타	
홍포2동	9	공원	1,200.0	0	100.0	1,100.0	기타	10	공원	200.0	0	200.0	0.0	기타	
홍포3동	11	공원	1,200.0	0	100.0	1,100.0	기타	12	공원	200.0	0	200.0	0.0	기타	



작성일자	
작성인	
작성부서	
작성일자	
작성인	
작성부서	



창녕군 공고 제2024-706호

##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창녕군수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

### 2. 개정이유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이 2023. 7. 20. 신설됨에 따라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관외 왕복이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(안 제5조)

### 4. 관련법규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

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(참조: 건설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1) 우편: (우)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건설교통과
- 2) 팩스: 055-530-1750
- 3) 메일: booms00@korea.kr
- 4) 직접방문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팀(☎055-530-172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「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##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며,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,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창녕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<u>말한다.</u>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말하며,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,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창녕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#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## 4. 작성자

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장 임채현(☎530-1724)

## 【관 련 법 규】

###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

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(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시·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2. 11. 30., 2019. 7. 5., 2023. 7. 20.>

1.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2. 삭제 <2023. 7. 20.>
  3.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
  4.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(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나 군수(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)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(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)가 해당 시·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·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3. 7. 20.>